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

운영위원회(구의회사무국)

의안번호	461
제 출 자	정해숙 의원 외 8명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	전문위원 유 천 곤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“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”에 대한 근거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

- 제1조(목적)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같은 법 시행령 제37”로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(안)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1.12.16.자로 개정되어 2022.01.13.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 중 1개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임.
- 본 조례 개정(안) 제1조(목적) 중 “지방자치법 제42조¹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²⁾”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변경으로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1) 지방자치법 제42조(상해·사망 등의 보상) ①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(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)
① ~ ⑥항 생략
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